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09
----------	-----

2019년 9월 2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8월 2일, 조상호 의원

2.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9년 9월 2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조상호 의원)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 관내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교원, 학부모 등에 대한 관련 교육 시행 등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교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8월 2일 조상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809호로 발의되어 2019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에 따른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¹⁾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92,958명으로 ‘18년도 대비 2,178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학급 수 및 교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²⁾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 지원의 필요성이 확대·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1]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구분	전국				서울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	일반학교		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	일반학교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급	일반학급	
2019	26,459	50,812	15,687	92,958	4,497	6,246	2,036	12,779
2018	26,337	48,848	15,595	90,780	4,537	6,056	2,148	12,741
2017	26,199	47,564	15,590	89,353	4,617	5,904	2,283	12,804
2016	25,961	46,645	15,344	87,950	4,764	5,940	2,225	12,929
2015	26,094	46,351	15,622	88,067	4,951	5,968	2,227	13,146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서울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 체제 구축 등 4개 분야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2) ‘특수교육 통계’(교육부, 2015년도~2019년도)
- 전국 : 학급수 28,902(‘15년) → 30,832(‘19년) [증가 1,930학급] / 교원수 18,048(‘15년) → 20,223(‘19년) [증가 2,175명]
 - 서울 : 학급수 4,112(‘15년) → 4,134(‘19년) [증가 22학급] / 교원수 2,657(‘15년) → 2,812(‘19년) [증가 155명]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³⁾

[표-2]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 특수교육 중점 과제별 추진 계획

중점과제	추진계획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특수교육기관 확충 /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강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확대.발전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장애공감문화 조성 /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장애학생 안전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운영 내실화 특수학교(급) 방과후 학교.돌봄 지원체제 강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특수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12,779명 중 35.1%인 4,497명만이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나머지 8,282명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더욱이 일반학교의 경우 교육공간 부족, 장애학생의 특성에 따른 일반학급 교사의 장애학생 기피 현상,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장애학생 이해 및 교수방법 역량 부족, 학생 및 학부모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서울 특수교육 운영 계획(2019, 서울특별시교육청)

다.4)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학습능력향상, 교원의 자질 향상 및 인식개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취지면에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학습능력향상, 교원의 자질향상,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특수교육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면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제명 등의 용어 사용에 대한 의견

-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의 제명(“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4)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9.5.29. 서울특별시의회 주최) 자료 참고.

조례안”)과 조례 전반에 사용되는 “진흥”이라는 용어를 “발전”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282, 2019.8.21.).

- 동 조례안의 제명 등에 사용되는 “진흥”의 사전적 의미는 “떨치어 일어남. 또는 떨치어 일으킴”이라는 의미를 갖는 반면, “발전”은 “더 낮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의 의미를 갖고 있는바⁵⁾

동 조례안의 “제명 등”에 사용되는 “진흥”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수정 의견으로 제시한 “발전”의 사전적 의미에 큰 차이가 없어 “제명 등”에 사용되는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⁶⁾

3)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의견(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제1항은 교육감에게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면서,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안 제4조제2항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시 사전에 학부모, 관련기관(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4조제1항제1호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조

5) 출처 : 네이버 어학사전

6) 제명에 “진흥” 또는 “발전”이 포함된 조례 현황(발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기 발견 및 취학지도’와 관련하여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 업무는 교육청보다 교육부에서 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282, 2019.8.21.).

○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취학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⁷⁾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선별검사, 관련 기관 간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⁸⁾

7)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8)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 따라서 안 제4조제1항제1호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취학 지도’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따라 이미 교육감에게 주어진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동 규정의 삭제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4조제1항제2호의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와 관련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양성은 대학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가나 교육부 차원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수교육교원의 양성’을 ‘특수교육교원의 배치’로 수정할 것과

같은 항 제4호의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을 ‘진로 및 직업교육’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282, 2019.8.21.).

○ 먼저 특수교육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학원 등 소정의 교원양성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교육교원의 양성’은 대학 또는 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규모, 학급의 특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 등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학교 현장에 적절히 배치하고,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안 제4조제2호의 ‘특수교육교원의 양성’을 ‘특수교육교원의 배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년)제,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취업지원,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운영하여 진로·직업교육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1항4호의 ‘진로상담’은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중 ‘상담’ 분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상담, 진로탐색, 진로설계 등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인 ‘진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실태조사에 대한 의견(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특수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는 「특수교육법」 제13조에⁹⁾ 따라 교육부장관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¹⁰⁾

9)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8조(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에 따라 실태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특수교육 분야의 정확하고 안정적인 통계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부터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¹¹⁾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특수교육 관련 국가승인통계 지표를 생산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실태조사와 함께 매년 특수교육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표-3] 2019 특수교육통계 주요 내용

구분	조사 항목
특수교육 주요현황	특수교육 주요 현황 / 연도별 특수교육 주요 현황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 자격 및 과정별 교직원 수 학교별 학급 및 학생수 / 장애영역별 학생 수 장애인 등록 현황 / 통학 현황 / 졸업생 진로 현황 / 전공과 설치학교 현황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현황
특수학급	특수학급 설치 학교 현황 / 특수학급 교원 현황 / 과정 및 학년별 학생 수 장애영역별 학생 수 / 장애인 등록 현황 / 졸업생 진로 현황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현황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특수교육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1) '2017 특수교육실태조사'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일반학급	일반학급 배치 현황 / 과정 및 학년별 학생 수 / 장애영역별 학생 수 장애인 등록 현황 / 졸업생 진로 현황
통합학급	통합학급 현황
순회교육	특수학교 순회교육 현황 / 특수학교 순회교육 과정별 학생 수 특수학급 순회교육 현황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현황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과정별 학생 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현황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인력 현황 /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장애영역별 현황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장애인 등록 현황
기타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현황 /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현황 신설 특수학교 현황 / 일반학교 전공과 현황 특수학교 시설 현황 / 특수학교 주소록 / 특수교육지원센터 주소록

○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의 실태조사가 교육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특수교육통계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고, 병행할 경우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과 통계자료의 오차로 인해 특수교육 지원 업무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282, 2019.8.21.).

○ 그러나 이미 교육부에서 매년 특수교육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기초자료를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를 위한 학교현장의 업무 과중 우려나 통계자료의 오차로 인한 혼선은 그리 클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바,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능력 향상 대한 의견(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육프로그램 수강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학습능력 향상’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교육프로그램 수강에 관한 내용이 명확

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 제8조를 ‘개별화교육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282, 2019.8.21.).

- 개별화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교육법」 제22조에서도¹²⁾ 각급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 지원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도 개별화교육계획의 법적 요건 이행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운영 내실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¹³⁾
- 이와 같이 개별화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화교육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3) 2019 서울 특수교육 운영 계획 p.25~26

6) 인식개선 교육 등에 대한 의견(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교육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인권보호,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 인식 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1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803호, 2018.1.4., 제정)」를 마련하여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이미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교육의 실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에 이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명문화하고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안 제10조제1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제2항과 제3항은 ‘삭제’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282, 2019.8.21.).¹⁴⁾

14) 제10조(인식개선 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및 법 제15조제1항에

7) 상위법령과의 중복 규정에 대한 의견(안 제7조 및 안 제11조)

○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자료의 제출, 지도·감독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11조에 대해 상위법령과¹⁵⁾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 제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 이해 및 이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 등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 등의 교육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인식개선 등의 교육을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10조제1항의 “인식개선 교육”을 “장애공감교육”으로 수정할 것을 제시하였음.

15)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제7조1항 및 제2항 관련)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11조의 경우 현재 교육감이 일반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육 업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규정만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282, 2019.8.21.).

- 그러나 비록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중복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으나 특수교육의 중요성 측면과 주민의 법적 접근성 측면이라는 관점에서 조례로 중복 규정하는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굳이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안 제11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동 조례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일부를 정비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개별화교육 지원으로 변경함.

VII.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09
----------	-----------

제안연월일 : 2019년 9월 2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일부를 정비하여 업무의 소관 및 교육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학습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을 “개별화교육 지원”으로 수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 다른 조례와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특수교육교원의 양성”을 “특수교육교원의 배치”로, “진로상담”을 “진로”로 수정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자구를 수정함(안 제7조제1항).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능력 향상”을 “개별화교육 지원”으로 하고 내용을 정비함(안 제8조).
- 이미 다른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개선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제2호 중 “양성”을 “배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진로상담”을 “진로”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안 제8조의 조명 “(학습능력 향상)”을 “(개별화교육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조명 외 부분을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로 한다.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p> <p>1. (생략)</p> <p>2.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p> <p>3. (생략)</p> <p>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 교육</p> <p>5. ~ 6.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원안과 같음)</p> <p>1. (원안과 같음)</p> <p>2. ----- 배치 -----</p> <p>3. (원안과 같음)</p> <p>4. ----- 진로 -----</p> <p>5. ~ 6. (원안과 같음)</p> <p>② (원안과 같음)</p>
<p>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① -----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 ----- -----</p> <p>②~③ (원안과 같음)</p>
<p>제8조(학습능력 향상)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수강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p>	<p>제8조(개별화교육 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p>
<p>제10조(인식개선 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 이해 및 이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 등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 등의 교육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인식개선 등의 교육을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p>	<p><삭 제></p>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등) (생략)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생략)

제13조(시행규칙) (생략)

제10조(지도·감독 등) (원안과 같음)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원안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
2.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

3. 특수교육 진흥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5. 특수교육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의 시행
6.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개별화교육 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